


ESG 개선을 위해 KCGS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www.cgs.or.kr)	<b>보 도 자 료</b>		
	보도	배포 즉시	배포

담당부서	ESG평가팀	문의	총괄: 김진성 팀장(02-6951-3711)
			환경: 최윤라 선임연구원(02-6951-3702)
			사회: 정승연 선임연구원(02-6951-3704)
			지배구조: 유고은 선임연구원(02-6951-3708)

## 제 목 : 개정 ESG 모범규준 공개

- ▶ 환경·사회 모범규준 1차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 3차 개정
- ▶ [E] 전사적 환경경영 관점 확대 및 국내외 환경 자율공시 체계 반영
- ▶ [S] 주요 이슈 중심 개편으로 사회책임경영과 경영전략 통합을 유도
- ▶ [G] 이사회 중심의 리더십 강조 및 지속가능성장 추구 의무 부과

### 1. KCGS ESG 모범규준 개정 방향 및 경과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신진영, 이하 KCGS)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함
  - KCGS는 1999년부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모범규준을 제·개정함
    - \* 환경 및 사회 모범규준: 2010년 제정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999년 제정, 2003년 개정(1차), 2016년 개정(2차)
  - 이번 개정은 ESG 및 책임투자 활성화라는 시장의 변화와 ESG 관련 국내외 제도·규범 개선 동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ESG 관행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함**
  - 개정된 모범규준은 **2022년 ESG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재무정보 표준화가 보다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모범규준도 관련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임

- (모범기준 개정 방향) KCGS는 경영 환경 및 국제 추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모범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고 ESG 평가와의 연계를 제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ESG 관련 이슈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 분석을 실시하고 국내외 모범사례 및 동향을 반영함
  -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보공개의 흐름을 반영하여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고, 우리 기업의 관행을 고려하여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함
  
- (모범기준 개정 추진 경과) ESG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모범기준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지난 3월에는 기업, 투자자, 이해관계자 등 모범기준 수요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두 달간 실시함
  - 또한 개정의 마무리 단계로 6월8일에는 전문가, 부문별 이해관계자, 정책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함



## II. KCGS ESG 모범기준 개정 특징

- KCGS는 ESG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우리 경제 및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한국형 ESG 모범기준**을 제시함
  
- (글로벌 트렌드 반영) 해외에서는 지난 10년간 ESG 이슈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글로벌 기준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음
  - (글로벌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반영) CDP, TCFD, SASB 등 비재무정보 프레임워크의 발전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ESG 리스크 관점 전폭 도입)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기업 경영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확대되고 있어 ESG를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하도록 유도함
  - (비재무정보 공개 확대 추세 반영)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커져 유럽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ESG 정보 공개 확대를 제안함
- (ESG 경영 확대 지원) 최근 국내에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체계를 마련함
- (리더십 역할 강화) 우리 기업의 ESG 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의 ESG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할을 제시함
  - (지속가능경영 관점 확대) 주주의 이익을 넘어 이해관계자 이익도 고려한 지속가능성 지향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ESG 경영을 유도함
  - (모범기준 활용성 제고) 기업 관점으로 서술하여 혼동을 줄이고,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사례 등을 수록하여 활용 편의를 제고함

### III. KCGS ESG 모범기준 개정 주요 내용 요약

□ 환경 모범기준

- (전사적 환경경영 관점 확대)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통합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분류 체계를 개편함
  - \* [대분류 개편] 환경경영계획, 환경경영실행, 환경성과 관리 및 보고, 이해관계자 대응  
→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 (국·내외 환경 자율 공시체계 반영) 전 세계적인 책임투자 확대 및 ESG 정보공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CDP, TCFD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함

□ 사회 모범기준

- (리더십 기반 전략적 사회책임경영 강조)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 소통 대분류를 신설하여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을 유도함
-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 재편) 기존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하고,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함

- \* [대분류 개편]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 리더십과 거버넌스, 비재무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 □ 지배구조 모범규준

- (이사회의 리더십과 책임 강조) 지속가능성 추구, 주주 이익 보호, 최고경영자 승계, 기업 집단 소속 이사회의 역할 등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안함
- (ESG 경영 관점 도입) 경영전략, 위험 관리, 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 경영을 유도함

붙임. KCGS ESG 모범규준 개정 주요 내용

# 붙임. KCGS ESG 모범규준 개정 주요 내용

## 1 환경 모범규준 개정

- (분류체계 개편) 기존 환경경영시스템의 계획(Plan)-실행(Do)-검증(Check)-개선(Act)에 따른 실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전사적 관점의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개편함
  -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의 4개 분류체계로 재편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대분류체계를 변경함

기존 모범규준

대분류	중분류
I. 환경경영계획	1.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2.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3. 환경목표 및 계획수립
	4. 환경친화적 조직문화
	5. 환경친화적 조직체계
II. 환경경영실행	1. 환경친화적 생산
	2. 기후변화 대응
	3. 환경친화적 공급망 관리
	4. 환경위험 관리
III. 환경성과관리및보고	1. 환경성과 관리
	2. 환경회계
	3. 환경감사
	4. 환경정보 보고
IV. 이해관계자대응	1.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2. 환경보호 활동

개정 모범규준

대분류	중분류
I. 리더십과 거버넌스	1. 환경경영 리더십
	2.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3. 환경경영 거버넌스
II. 위험 관리	1.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2.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3. 위험관리체계
III. 운영 및 성과	1. (설계)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2. (조달/구매/유통)친환경 공급망
	3. (생산) 친환경 사업장
	4. 성과 관리
	5. 환경회계
	6. 생태계 보전
IV. 이해관계자 소통	1. 이해관계자 설정
	2.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3. 환경정보 공개

- (국내외 자율공시체계 반영) 전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확대 및 ESG 정보공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외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적극 고려함
  - 기후변화 관련 자율 공시체계인 CDP, TCFD 등의 주요 내용을 대폭 반영함
- (주요 개정사항)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순환경제 등 글로벌 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의 파악 및 선제적 대응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전 과정 가치사슬의 친환경 설계를 통한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가. 기후변화 중요성 강조 및 위험·기회 요인 파악

- (환경 위험/기회 요인 파악 및 대응강화)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함
- (녹색채권 등 친환경 자금 조달) 친환경 사업 전략 계획 및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방편으로 녹색채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 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평가, 공개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좌초자산 고려)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좌초 자산(Stranded Asset)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래의 투자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내부탄소가격 도입)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내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기 위한 내부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음

## 나. 친환경 공급망 구축 및 자원순환 경제 구현

- (친환경 설계를 통한 순환경제 구현)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 관점에서 자원순환을 고려하여 제품 설계, 사용, 폐기 단계에서 선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함
- (친환경 공급망 구축) 기업은 생산자인 동시에 구매자로서 친환경 구매를 통해 시장 내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여 친환경 제품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며, 나아가 공급 협력업체의 환경 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친환경 생산 확대를 위하여 전 과정 가치사슬 단계에서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 생태계 보전 활동 확대

- (생태계 보전 활동 이행) 산림자원, 수자원 등 기업의 자연자원 이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여 생물다양성, 산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여야 함

## 2

# 사회 모범규준 개정

### □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 변경)

-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이해관계자 소통 대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을 유도함
- 이해관계자 분류 중심의 기존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하고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함

기존 모범규준

대분류	중분류
I. 근로자	1.1. 고용 및 근로조건
	1.2. 노사관계
	1.3.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1.4. 인력 개발 및 지원
	1.5. 직장 내 기본권
II. 협력사 및 경쟁사	2.1. 공정거래
	2.2. 부패방지
	2.3. 사회적 책임 촉진
III. 소비자	3.1. 소비자와의 공정거래
	3.2. 소비자 안전 및 보건
	3.3.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3.4. 소비자와의 소통
IV. 지역사회	4.1.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4.2. 지역경제발전
	4.3. 지역사회와의 소통

개정 모범규준

대분류	중분류
I. 리더십과 거버넌스	1. 리더십
	2. 전략과 방침
	3. 조직과 의사결정
	4. 기업 문화
II. 비재무 위험 관리	1.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
	2. 비재무 위험과 기회의 인식
	3. 비재무 위험 대응
III. 운영 및 성과	1. 인권
	2. 노동관행
	3. 공정운영관행
	4. 지속가능한 소비
	5. 정보보호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IV. 이해관계자 소통	1. 이해관계자 참여
	2. 정보 공개

### □ (모범규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록 추가)

- 사회책임경영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 법/규제 동향, 우수 사례 등을 수록하여 모범규준 활용도를 제고함

## 가. 사회책임경영 리더십과 비재무 위험 관리 강조

- 기업은 중대한 재무 이슈와 같이 회사에 중요한(Material)한 비재무 이슈를 파악하고, 위험 또는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 및 기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회책임경영 리더십) 최고경영진은 사회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효과적인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업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전략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사업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사회책임경영 기업문화 확립)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기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최고경영진은 각 기업의 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이사회는 이를 평가 및 모니터링해야 함
-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 이사회는 비재무 위험을 전사적 위험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비재무 이슈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해야 함

## 나.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체계 수립

-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권리 보장,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방지하는 경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인권경영 시행) 기업은 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이슈 파악을 위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해야 함. 나아가 인권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그 현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증진해야 함
- (노동관행 개선) 기업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다양성을 증진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노사간의 건전한 소통과 근로자의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기업은 자사 및 협력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함

## 다.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 제고

- 기업은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

- (공급망 위험 관리) 기업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해야 함
-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은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동반성장을 추구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라. 지속가능한 소비

- 기업은 소비자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소비자 권익 보호)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함
  - (소비자 안전 고려) 기업은 정기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마. 정보 보호

- 기업은 정보자산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축)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사회 혹은 경영진 내에 정보 보안에 대한 이해를 가진 구성원을 확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책임자를 확보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기업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바.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 기업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투입한 자원과 성과를 관리하여야 함

## 사. 이해관계자 소통

-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대외 공개 채널에 사회책임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 이해관계자 소통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3

##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 (대분류 및 중분류 구성 변경) 기존 5개 대분류를 주요 4개 대분류(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로 재편하여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제고함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중분류를 신설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추가함

기존 모범규준		개정 모범규준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I. 주주	1. 주주의 권리	I. 이사회 리더십	1.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2. 이사의 역할과 책임
	3. 주주의 책임		3. 이사회의 구성
II.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4. 사외이사
	2.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5. 이사회의 운영
	3. 사외이사		6. 이사회 내 위원회
	4. 이사회의 운영	1. 주주의 권리	
	5. 이사회 내 위원회	2. 주주총회	
6. 이사의 의무	III. 감사	1. 내부 감사	
7. 이사의 책임		2. 외부 감사	
8. 평가 및 보상	IV. 이해관계자 소통	1.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2. 정보 공개
		2. 외부감사인	
IV.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2.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V. 시장에의한 경영감시	1. 공시		
	2. 기업 경영권 시장		
	3. 기관투자자		

- (주요 개정사항) 지속가능성 추구, 주주 이익 보호, 최고경영자 승계, 기업집단 소속 이사회 역할 등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
  - 경영전략 · 위험관리 · 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여 적극적인 ESG경영을 유도함

### 가. 이사회 ESG 리스크 관리

- 이사회가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를 중요 위험관리 사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함
  -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검토)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음

- (ESG 위험 관리) 이사회는 ESG 위험을 중요 위험관리 사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영자원 및 자본배분에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 (지속가능성 추구 기업문화 조성)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목적·가치·경영전략·정책·관행 등이 기업문화와 일치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함
-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는 보수정책 수립)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함

## 나. 기업집단 소속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는 해당 기업과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의 감시·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함

## 다.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승계시스템 구축

- 이사회는 비상승계계획이 포함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시스템 구축 책임)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및 주요 경영진이 될 자의 발굴, 육성, 은퇴 등 기타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라. ESG 논의 등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 대화

- 이사회와 경영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 이사회와 경영진은 소통 담당 사외이사를 통해 필요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논의주제는 지배구조 뿐 아니라 ESG 전체로 확대할 것을 권장함
  - (주주총회 결과 검토 및 조치 공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상당 수준의 반대가 있었던 안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검토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함

## 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건 분리

- 감사위원의 과반수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는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바.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 및 산정 근거 설명

-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정책 및 보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주주의 참여와 감시의 활성화를 도모함